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지도자용



가이드라인 활용 안내사항

- 본 가이드라인은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로부터 스포츠인을 보호하고 스포츠계의 전반적인 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제작·배포되었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에 사용된 정의와 예시, 각각의 사례와 관련 법률은 대략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용자 및 모든 상황에서 적용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 본 가이드라인에서 지도자는 스포츠인권을 수호하는 현장 최일선의 지킴이라는 전제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 지도자 여러분의 노력과 활약으로 건전한 스포츠인권 문화를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CONTENTS

PART 1

스포츠인권의 이해 | 7

1. 인권의 정의 | 8
2. 스포츠현장에서의 인권 | 8
3. 스포츠인권 현장 요약 | 8
4.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인권 강조 | 9

PART 2

예방 및 대응가이드 | 11

1. 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 12
2. 성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 15
3. 학습권침해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 17
4. 사생활침해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 19
5.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등) 대응가이드 | 21

PART 3

부록 | 32

1. 체크리스트 | 33



참고문헌 | 34





Part 1

스포츠 인권의 이해

1. 인권의 정의
2. 스포츠현장에서의 인권
3. 스포츠인권 현장 요약
4.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인권 강조

1. 인권의 정의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2.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

스포츠는 신체를 이용해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인권이다.
그러므로,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

3. 스포츠인권 헌장 요약

제1장 스포츠는 인권이다.

제1조 자유로운 신체활동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스포츠는 인권이다.

제2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성별, 성적(性的) 지향,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운동능력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함)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 체육단체 등 체육 관련 기관과 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함)는 이 권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완전한 형태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누구나 원하는 신체활동을 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다양한 신체활동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그 자체로 존중 받아야 한다.

제2장 스포츠는 자기표현의 도구이다.

제3장 누구나 스포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4장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탁월한 목표 달성에 도전할 권리가 있다.

제5장 누구나 스포츠를 직업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6장 스포츠는 안전한 활동이어야 한다.

제7장 스포츠는 세계인의 공용어이다.

제8장 스포츠는 인권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차별 또는 인권침해를 신고하거나 문제 제기로 인해 어떠한 종류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 국가 등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장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4.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의 인권 강조

올림픽현장 내 올림픽 이념의 기본원칙 中

2. 올림픽이념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보존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를 통해 조화로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6. 올림픽 현장에 명시된 권리 및 자유는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IOC는 스포츠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레저활동을 즐길 권리, 비차별, 안전, 기본욕구에 대한 존중 및 건강한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인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올림픽 아젠다 2020+5 권고사항 13번 통한 인권 강조

- 인권관련 전략적 틀 도입 승인(2022년 9월)
- 5개 핵심 집중 영역
 - 1) 평등과 비차별
 - 2) 안전과 복지
 - 3) 생계 및 양질의 일자리
 - 4) 발언의 자유
 - 5) 사생활 보호

올림픽 아젠다 2020+5는?

IOC 집행위원회가 2021년 3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로운 올림픽 개혁안으로 총 15개의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13번 권고안에는 한 조직으로서의 IOC, 올림픽대회의 주인으로서의 IOC, 올림픽무브먼트의 리더로서의 IOC가 인권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Part 2

예방 및 대응가이드

1. 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2. 성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3. 학습권침해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4. 사생활침해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5.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등) 대응가이드

1. 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1) 폭력의 유형

(1) 신체적 폭력

신체적 트라우마 또는 부상을 야기 시키거나 선수의 존엄성 및 자존감을 약화시킬 수 있는 행위
(밀치기, 발로차기, 때리기, 물건 던지기, 기합, 얼차려 등)

(2) 방관적 입장의 폭력

집단 구성원들이 폭력 행동을 무시하거나 모른 체 하는 것 혹은 폭력을 묵인하거나 지지하는 행위
(선수가 부상을 당했음에도 즉각적인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선수가 부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훈련이나 경기를 지속하게 하는 경우 등)

(3) 정신적 폭력

몸에 상처가 나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은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감정적 학대 행위

- ① 언어적 행위: 말이나 욕설 등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
(고함과 욕설, 외모 비하, 협박 등)
- ② 관계적 행위: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이나 겁을 주거나 따돌리는 것
(무시하기, 따돌리기, 비웃기 등)
- ③ 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행위: 개인의 할 일이나 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심부름 시키기, 음주 혹은 흡연 강요하기, 자유 시간 통제하기, 가스라이팅 등)

(4) 경제적 폭력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① 선수 개인 소지품과 개인 훈련 장비를 서로 간에 돌려주지 않거나 장기간 빌리는 행위
(스마트폰, 고가의 이어폰 등 IT기기, 브랜드 옷과 신발 등)
- ② 상금이나 부상의 상납 또는 갈취, 선물 등을 강요하는 행위
(생일, 명절, 회식 등 특정한 날에 부당한 선물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것)



1. 폭력



2) 스포츠폭력의 사례

① 불합리한 훈련 및 활동 요구

A선수는 축구 연습경기 중 상대선수의 태클에 다리 부상을 당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듯 했지만 병원에서는 휴식과 재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큰 부상이 아닌 듯하자 코치는 큰 대회를 앞두고 있다며 훈련에 참가하라고 했다. “처음 다쳤을 때, 바로 치료를 받았더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텐데, 담당 코치님께서 오히려 제가 약해서 그런거라고 더 강화가 필요하다고며 훈련을 시키셔서 올면서 훈련을 했죠.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 다리에 마비가 올 정도로 심해졌어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5조(징계사유 및 대상)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폭력의 방조 또는 방관

이번 대회에서 부진한 실적을 낸 A선수와 동기인 B선수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어 선배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채팅방에는 연대 책임이라는 이유로 A, B선수와 같은 기수의 선수들이 모두 초대되어 비난을 받고 있다. 선배들의 거친 욕설과 협박이 마구잡이로 올라오자, B선수는 감당하기 힘들어 채팅방을 나가보지만 계속해서 다시 채팅방에 초대되었다. 결국, 고참 선배 한 명이 말로는 안되겠다며 다른 선배들을 시켜 A, B선수와 동기들을 운동부실로 집합시켰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다른 선배선수는 감독님께 말씀을 드릴까 잠시 고민하였으나,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마음을 접었다.



형법 제32조(종범)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가해 학생의 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특수 폭행죄가 성립하여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선수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방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폭력 사실을 인지하였을 즉시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1. 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3) 폭력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1) 선수 관리

- ① 경기 및 훈련 준비와 정리는 모든 선수들이 동등하게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 ② 지도자는 기합이나 가혹행위(구타와 욕설) 근절을 선수들에게 수시로 강조한다.
- ③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공포감을 느끼면 폭력이라는 점을 선수들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킨다.
- ④ 경기 및 훈련 중 선수 간 인격을 모독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 등은 삼가하도록 지도한다.
- ⑤ 선수 개인 소지품과 훈련 장비는 스스로 관리하도록 한다.
- ⑥ 숙소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한 선수 본인 스스로 정비하고, 다인실인 경우 선후배에 관계없이 역할을 동등하게 분담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⑦ 개인의 할 일(세탁, 기호품 구입, 학교 과제 등)은 선수 본인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한다.
- ⑧ 팀 내 친목도모나 단합이 목적인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휴식 시간을 방해하는 일은 삼가하도록 지도한다.
- ⑨ 출전기회, 출전시간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선수 간 시기질투가 부적절한 가혹행위(구타와 욕설)로 번지지 않게 지도한다.

(2) 지도자의 역할

- ① 욕설, 고함, 물건 던지기 및 파손, 자해 등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고 지도한다.
- ② 경기 및 훈련 중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경기장 및 훈련장에서 폭력 사안 발생시, 빠른 신고를 통해 조치를 취한다
- ④ 진학 지도, 개별 훈련 등 개별면담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배석시키거나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한다.
- ⑤ 선수에게 음주, 흡연, 무단이탈 등 일탈 행위를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 ⑥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수가 적절한 진료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⑦ 평소 특정 선수의 외모와 말투, 행동을 놀림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⑧ 선수 혹은 학부모, 관계자와 절대 금품 거래 및 사적인 선물을 강요를 하지 않는다.
- ⑨ 상대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등 상대에 대한 통제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삼가한다.

2. 성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1) 성폭력의 유형

(1) 신체적 성폭력

폭행이나 협박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든 신체적 가해 행위

(2) 정신적 성폭력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적절한 말과 행동 혹은 상대에 대한 통제능력 행사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 불쾌감을 주는 행위(성적 비유, 외모평가, 공개장소에서의 음란물 시청 등)

(3)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협박, 전시, 판매하는 등의 행위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4) 스토킹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2) 성폭력의 사례

① 단체채팅방을 통한 부적절한 성희롱

A코치는 가끔 선수들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배포하고 실수라고 한다. 이 외에도 훈련에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 피드백이라는 명목삼아 성적인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채팅방으로 전송했고 선수들이 읽지 않으면 왜 답장이 없냐며 선수들로 하여금 심적/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했다. 선수들은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훈련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성희롱적 발언 및 신체 접촉 행위

저랑 친한 선수가 코치님으로부터 성희롱적 언어폭력을 당했어요. 친구의 엉덩이가 납작하다고 말하거나 엉덩이를 톡톡 치고 여성이 듣기에는 힘든 발언을 일삼았어요. 운동하기에 적합한 체형이 아니라는 등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중 이런 것들이 훈련 도중 또는 휴식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선수가 많이 힘들어했고, 마주하기 힘들어서 운동에 잘 안 나오기도 했고, 안 나오니까 또다시 불려 가기도 했어요



성희롱 및 성추행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5조(징계사유 및 대상)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 및 훈련 중 성적 굴욕감(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선수와 신체접촉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습니다.



지도자는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였을 즉시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2. 성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3) 성폭력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1) 선수 관리

- ① 성폭력은 이성 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지도한다.
- ② 경기 및 훈련 중 성적 굴욕감(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한다.
- ③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가리키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한다.
- ④ 외모 관련 농담 혹은 성적인 이야기나 농담도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킨다.
- ⑤ 선수의 특정 신체부위를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지도한다.
- ⑥ 단체 채팅 방 내 음란물(사진 및 동영상, 각종 성인사이트 링크) 공유 및 특정 선수를 향한 외모 평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⑦ 샤워 및 탈의 중 다른 선수의 신체를 허락없이 만지거나 씻겨주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금하도록 지도한다.

(2) 지도자 역할

- ① 훈련 중 선수와 신체 접촉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다.
- ②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특정한 역할 부여는 성폭력에 해당함을 인지한다.
(예: 회식 시 술 따르게 하기 등)
- ③ 선수와 경기 및 훈련시간 외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다.
- ④ 진학 지도, 개별 훈련 등 개별면담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배석시키거나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한다.
- ⑤ 공개된 장소에서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음란물(사진 및 동영상, 각종 성인사이트 링크)을 보지 않는다.
- ⑥ 특정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성폭력적인 느낌을 주었다면 성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 ⑦ 간접적 매체(컴퓨터, 휴대전화 등)를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출판물을 보내는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 ⑧ 팀 내 성폭력 이슈를 인지한 즉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한다.

3. 학습권 침해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1) 학습권 침해의 정의

- (1) 수업결손
경기력 향상을 위해 과도한 경쟁 및 훈련으로 인하여 일일 훈련회수 증가, 주당 훈련일수 과다로 정규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
- (2) 훈련 피로도로 인한 학업 소홀
선수 개인 신체 능력 및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훈련으로 인해 학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
- (3) 학교 행사 불참
선수의 동의 없이 학교에서 안내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훈련일정을 계획하여 선수가 공식적인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
- (4) 형식적인 보충수업
보충수업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활용하고 보충학습을 선수가 알아서 하도록 방임하는 것

2) 학습권 침해 사례

- **운동과 학업 병행에 대한 선수 의견 무시**
고등학생 A 선수는 부상이나 집안 사정 등의 이유로 생각보다 빠르게 선수생활을 종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은퇴 이후 지도자가 아닌 다른 길도 생각해보고 싶어서 학교 수업을 통해 기본 교양과 지식을 학습하고 대학진학을 위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러나 지도자와 부모님은 운동해서 대학을 가면 된다고 훈련에 더 집중할 것을 요구했고 같은 팀에서 예외를 들 수 없다며 선수A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 수업 불참을 공문 처리 했다.
- **학습 결손**
대회 준비를 하는 선수A는 새벽, 오전, 오후, 야간 하루에 네 번 연습에 참여한다.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팀에 피해가 갈까?'하는 마음에 연습에 빠질 수도 없다. 온종일 연습하는 시간 외에 수업을 들어가려고 해도 너무 피곤해서 집중이 되지 않고 잠만 자게 된다. 수업에 들어가는 것 또한 선수A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도자가 학교와 상의해서 수업일수를 정한다. 과도한 훈련으로 지친 선수A는 수업에 들어갈 수 있는 날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학교 수업에 참여하기 보다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집이나 휴게실로 발길을 돌린다.



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에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선수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학습권 침해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3)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1) 선수 관리

- ① 지도자는 학생선수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운동부 활동 속에서 학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② 학생선수가 학업을 자기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운동과 학업을 균형 있게 병행하도록 동기부여 하고 지원한다.

(2) 지도자 역할

- ① 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에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인식한다.
*학생선수들이 상급학교 진학과 졸업 후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소양을 익혀야 하는 학령기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② 지도자는 학생선수들에게 적절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 ③ 경기 성적을 위해 학업 결손을 방치하거나 운동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하지 않는다.
- ④ 학생선수가 훈련이나 경기 활동으로 학습 시간과 기회를 방해 받을 경우, 학교나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취한다.
- ⑤ 학습 결손 보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할 시, 학교 관계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4. 사생활 침해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1) 사생활 침해의 유형

- (1) 심부름 강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심부름, 운전, 빨래, 청소 등을 대신 시켜 사적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
- (2) 사적시간 침해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외박의 불허, 운동 이후 자유시간 및 사적 공간과 시간 침해 등의 생활 통제를 하는 것
- (3) 외모/복장 통제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액세서리 착용, 복장 등 운동과 무관한 외모 관리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하는 것
- (4) 과도한 훈련일정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전에 공지된 일정을 초과한 과도한 훈련으로 인해 개인 시간이 침해되는 것

2) 사생활 침해 사례

① 심부름 강요

“훈련 외 적인 용도로 선수들을 활용해요”

팀 내 비주전인 D선수는 훈련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도 감독의 심부름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정말 바빠서 어쩔 수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도움을 드렸지만, 점점 심부름 빈도가 잦아지고 요구사항도 점점 늘어났다. 휴식을 취하지 못해 훈련에 지장이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주전이 아닌 경우 감독 눈 밖에 나면 안 된다는 걱정과 개인적인 용무를 시켜도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었다.

② 지도자의 사생활 간섭

“이성에 눈 돌리지 말고 무조건 운동만 해라”

대회를 앞 두고 휴일에도 선수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지도자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성 친구 사귀면 자르겠다’, SNS 사진을 올리면 ‘집에서 쉬지 뭐하고 돌아다니냐?’ 등 사생활을 일일이 감시 당하는 기분이다. 심지어는 주말에도 숙소로 전화하여 외부활동을 금지 당하기도 하였다.

③ 사적시간 침해

“기혼자인데도 무조건적인 숙소생활을 강요했어요.”

실업팀 선수인 A는 기혼자이지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다. 일년 중, 시즌기간에는 전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여야 하고, 비시즌 기간에는 전지훈련을 가는 등 집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집이 있는 연고지 내에서 대회가 있을 때는 집에서 통근하고 싶지만 팀 내규 때문에 여의치 않다.



지도자는 개인적인 용무는 스스로 해결하고 내부 규율이나 운동 성적, 팀워크 등을 이유로 선수 개인의 자유 시간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4. 사생활 침해 유형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3)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1) 선수 관리

- ① 선수들 간 심부름 강요, 외모 및 복장 통제 등 사생활 침해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 ② 합숙소 선택권 및 개인 외출, 외박과 관련하여 자유를 제한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 ③ 적절한 휴식시간 및 자유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④ 성인선수의 사생활과 여성선수의 생리·출산·육아와 관련된 건강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지도자 역할

- ① 지도자는 적절한 운동시간과 휴식시간을 정해서 지키고 내부 규율이나 운동 성적, 팀워크 등을 이유로 선수 개인의 자유 시간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선수들의 합숙소 선택권을 보장하고, 외출이나 외박, 외모 꾸미기 등은 훈련에 방해 받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한다.
- ③ 지도자는 성인선수의 사생활과 여성선수의 생리·출산·육아와 관련된 건강권을 보호한다.
- ④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전에 공지된 일정을 초과한 과도한 훈련이나 개인의 신체 능력,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훈련은 삼가한다
- ⑤ 공식적인 훈련시간 외의 개인의 시간을 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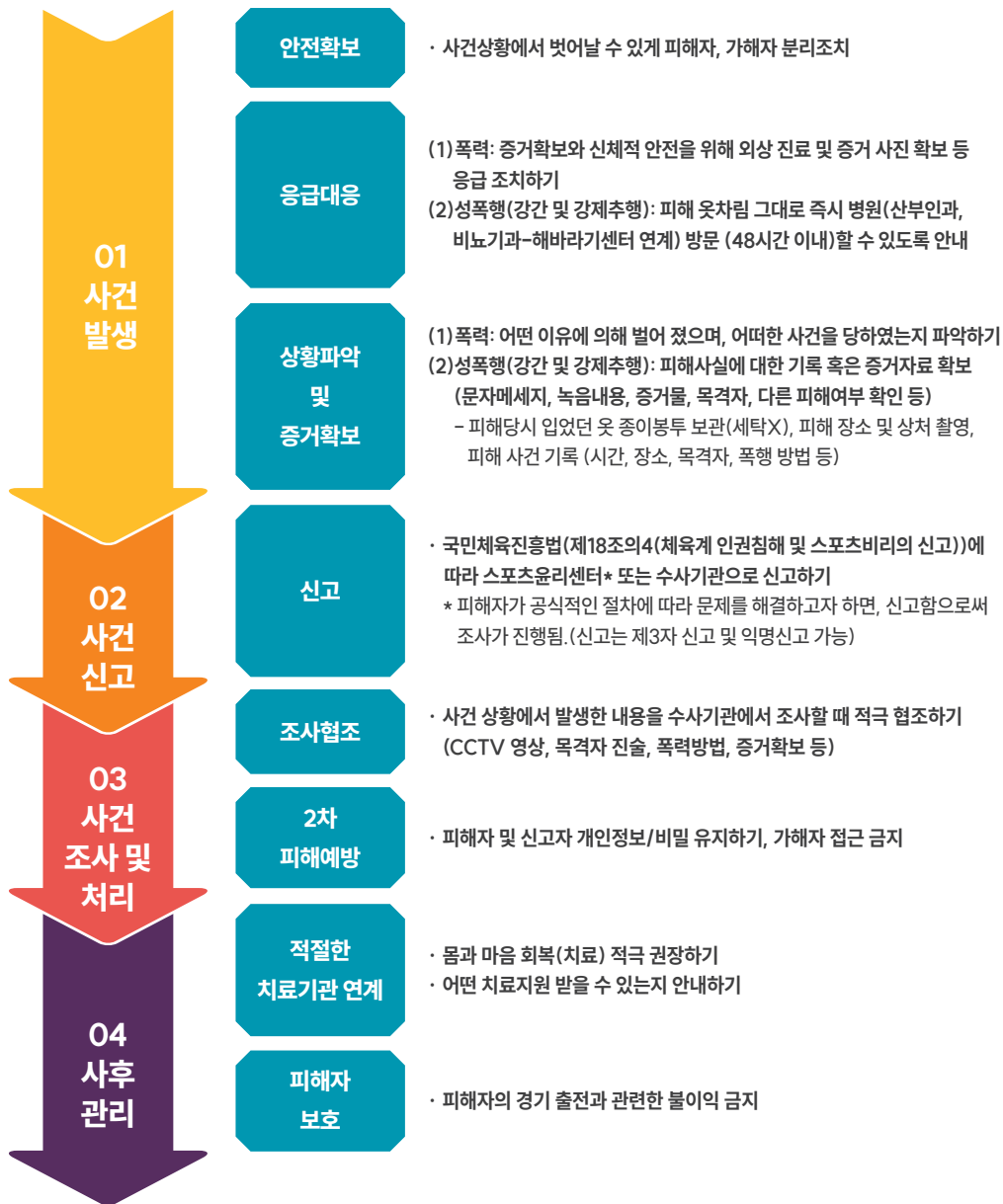


5.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대응가이드



Q1. 대응절차 체계도

도움 요청 시/피해 사례 인지 시, 협회 및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내용 숙지 필요



5.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대응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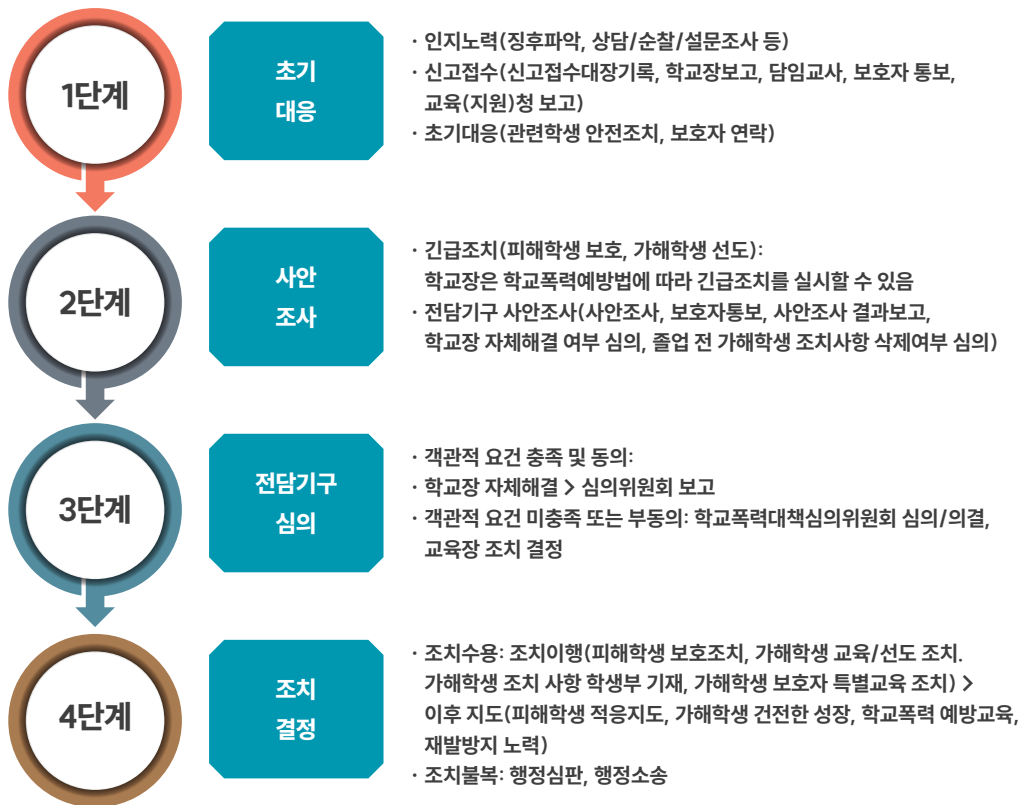
Q2. 신고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스포츠윤리센터





5.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대응가이드

Q2. 신고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학교 및 교육청(폭력)



5.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대응가이드



Q2. 신고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학교 및 교육청(성폭력)



Q3.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초기대응 요령

신고



-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4항)

피해자 조치



- 심신 안정 및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 급선무
- 가벼운 상처는 가까운 의료시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에 신고

가해자 조치



-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자 역시 충격을 받아 돌발행동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빨리 보호자에게 연락
- 가해자에게 지나친 질책 및 감정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유의

보호자에게 연락



- 보호자에게 사실을 빠르게 알리기
- 보호자들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상황전달, 정해진 장소에서 선수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
- 사안의 내용과 협회 측의 대처사항에 대해 보호자에게 정확히 안내
- 학생선수인 경우, 보호자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

목격자 조치



- 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받은 간접 피해자도 유사한 문제 반응 나타날 수 있음
- 현장 접근을 통제, 특히 학생선수의 경우 스트레칭, 경기장 견학 등 흥미 있는 활동으로 주의를 돌려 심리적 충격 완화 필요
- 사안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상황을 인식시키고, 차후 유사한 폭력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교육 실시
- 사안에 관련된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낙인을 찍어 따돌리거나, 사안과 관련 하여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시키기

Q3.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요**

- 가해자가 지도자일 경우: 지도자 교체, 지도 환경 변경
- 가해자가 선수일 경우: 분리조치
- 수사기관과 연계해 가해자 접근·연락·접촉 금지 조치



**훈련을 가는 것이
힘들어요**

- 치료 기관 안내 및 연계(p.29 참고)
- 일정기간 휴식 제공



**지원(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받고 싶어요**

-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전문가 상담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 연계(p.29 참고)
- 스포츠윤리센터 사고 처리 도움, 고소장 작성, 검찰/경찰 조사 지원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 전담기관(수사기관 포함) 및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진행
- 조사결과에 따른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징계 관할 단체에서 처분



**가해자가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 가해자가 동료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강제 불가
- 가해자가 지도자·일반인인 경우에도 위원회·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서면사과 하도록 강제는 어려움(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

Q3.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3) 2차 피해 예방



2차 피해란?

폭력 가해자 또는 다른 사람이 폭력 피해자·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소문·따돌림 등으로 괴롭히는 것

2차 피해 예시

조용히 절차에 따라 해결되는 줄 알았던 사건 내용이 해당 종목 내부는 물론 스포츠계 내부로 퍼져 나갔다. 가해자의 인적 사항은 물론 피해자의 나이, 이름까지 모두 스스럼없이 알려졌다. 심지어 대회 일정이 겹치는 경우 가해자를 매도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한 계속해서 언급되었으며 “개가 그렇게 예쁘냐?” 또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라고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 위 내용은 2차 피해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2차피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 비밀 보장

- 피해자 정보는 사안처리 담당자에게만 공개
- * 담당자는 신고자/고발자에 대한 모든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및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됨.)



2차 피해를 입은 것이 의심/확인된다면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
-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원하는 경우 가해자가 학생·지도자라면 훈련 환경 분리, 훈련 배제 등의 조치
- 운동부 내 스포츠 인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2차 가해 예방교육 제공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2차 가해를 한 경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



가해자의 위협이 염려되는 경우

- 수사기관/법원에 신변안전조치*, 구속 신청
- *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 쉼터 등 시설에서의 보호, 신변 경호, 집 주변 순찰 지원 등

Q3.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4) 신고기관 안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으로 즉시 신고하기**



(1) 스포츠윤리센터

상담·신고 접수(익명 상담/신고 가능)

홈페이지 <https://www.k-sec.or.kr>

이메일 with@k-sec.or.kr



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2876 / 02-6256-1057

전화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00~오후 09:00

토요일, 공휴일에는 온라인 상담신고하기 이용

방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78, 7층 (우:04168) 권익보호팀

방문 가능 시간: 평일 오전 09:30~오후 05:30

※스포츠윤리센터로 우편을 보내주시면 상담사 확인 후 답변 제공



(2) 학교 및 교육청

신고 접수

홈페이지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 www.safe182.go.kr



대표번호

(국번없이) 117/ (문자신고) #0117

전화 가능 시간: 24시간

방문

전국 17개소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Q3.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5)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기관	연락처	지원내용
스포츠 윤리센터	T. 1670-2876 / 02-6256-1057	· 체육계 인권침해, 스포츠 비리 상담 및 신고 ·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 의료·법률·심리·정서·임시주거 지원
국가인권 위원회	T. 02-2125-9862 / 1331 메일 sports@nhrc.go.kr 텔레그램 : @hrsports	· 스포츠인권 진정사건 조사 :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차별 피해상담 및 피해사례 조사 구제 ·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가의 심리 및 법률상담 무료지원
여성 긴급전화	T. 1366 365일 24시간 운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등으로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호 또는 긴급상담 지원 · 전화권역(시·도)별로 설치·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긴급 피난처 운영 임시보호 (*최대 7일간 숙식제공, 데이트폭력 피해자 최대 30일 보호)
해바라기 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지원기관 '해바라기센터' 확인가능	·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 상담, 의료지원 · 법률-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전국에 39개 센터운영 · 여성경찰관 상주, 피해자 진술조서(진술녹화)작성, 진술조력인 지원을 통한 진술조력 제공(만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긴급상담 및 지속상담 ·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전담의료진이 무료진료,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를 채취 ※ 단, 비급여 심리치료는 회당 15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 무료법률지원사업,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T. 02-735-8994 365일 24시간 운영	· 상담 신청 시 상담과 함께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등 연계 지원

기관	연락처	지원내용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T. 02-817-7959 메일 kcsvrc@cyber-lion.com	· 정책, 제도적 개선 : 사이버성폭력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을 제시하여, 법과 정책,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 · 피해지원 : 상담지원, 영상삭제지원,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지원 등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를 도움 · 교육 : 교육, 인식 개선
성폭력 피해 상담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지원기관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확인가능	· 상담 : 피해자 및 가족 지속상담 · 수사·재판 절차 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 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 전담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역 내 시설 연계 :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의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지원 - 피해상담
성매매 피해 상담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지원기관 '성매매피해 상담소' 확인가능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 및 자활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 보호 및 상담,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 진학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
대한 인권센터	전국 62개 대학	· 인권상담,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사건 처리 · 학내 사건의 상담·조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9개 전국 지원센터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홈페이지의 전국센터 안내에서 확인가능)	· 경제적 지원 :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간병비, 돌봄 비용, 취업지원비 등의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피해 회복을 도움 · 주거지원 : 범죄피해로 기존 집에서 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주거환경개선, LH 주거지원 신청 절차 안내등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 · 법률지원 : 법과 형사사건 절차의 어려움으로 자문 및 안내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재판모니터링, 법정동행 등을 지원("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심리지원 : 불의의 범죄피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상담, 개별·집단 치유프로그램(자조모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 · 기타지원 : 전국 지원센터의 특성의 맞는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회복을 도움

기관	연락처	지원내용
대한법률 구조공단	T. 132 https://www.klac.or.kr 전화, 사이버, 화상상담(예약), 방문상담(예약)	·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
스마일센터: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기관	T. 02-333-1295 (24시간 전화접수 및 상담) 등록면담, 심리치료 등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강력범죄 피해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 겪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회복을 지원 ·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 서비스



Part 3

부록

1. 체크리스트

1. 체크리스트

본 체크리스트는 선수들의 스포츠인권 현황 점검 및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운동부 내 스포츠인권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인권실태 파악을 통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건강한 스포츠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최근 1년간 운동부 내(합숙, 훈련, 대회 중 포함)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세요.**

1) 폭력	Yes	No
①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② 훈련태도나 경기성적을 이유로 체벌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③ 일정시간 집단으로부터의 격리나 감금을 당한 적이 있다.		
④ 개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운동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		
⑤ 선배나 동기, 지도자로부터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2) 성폭력	Yes	No
①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를 들은 적이 있다.		
② 몸의 밀착, 껴안기 등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		
③ 지도자가 사적인 만남이나 데이트를 강요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④ 성적표현, 사진, 자료 등을 보여주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본 적이 있다.		
⑤ 성이나 성적 정체성에 기반한 모욕,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		
3) 학습권 침해	Yes	No
① 대회 출전을 위한 훈련을 이유로 수업 불참 등을 강요 받은 적이 있다.		
② 훈련이나 경기일정을 미리 공지 받지 못해 학습에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		
③ 대회 출전, 훈련을 이유로 선수들에게 학교 수업 불참 등을 강요 받은 적이 있다.		
④ 훈련시간이나 대회일정을 미리 공유 받지 못해 학습권을 침해 받은 적이 있다.		
⑤ 특별한 이유 없이 훈련 시간, 자유 시간, 귀가 시간을 임의로 조정해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4) 사생활 침해	Yes	No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이동을 제한 받은 적이 있다.		
② 개인의 훈련 성적 및 경기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서 공개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은 적이 있다.		
③ 지나친 운동지시나 휴식의 제약, 단체 생활에서 부당한 간섭과 요구를 경험한 적이 있다.		
④ 운동부 내에서 부상 시 무리한 운동을 강요해 신체 건강과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⑤ 본인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에 대해 강제적으로 SNS 공유를 강요 받은 적이 있다.		
⑥ 특별한 이유가 없는 통일된 두발의 형태, 의상 선택과 관련하여 개인의 개성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은 적이 있다.		
⑦ 자유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고를 강요하는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		
5) 지도자인권 침해	Yes	No
① 선수나 선수보호자로부터 폭언, 폭력 등 명예훼손이 가능한 언어나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② 정당한 지도활동에 대해 반복적인 불만을 표출하여 지도활동이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③ 선수나 선수보호자로부터 부당한 사생활 간섭 및 통제를 받은 적이 있다.		
④ 부당한 계약이 발생한 적이 있다.		
⑤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시, 가해행위를 무고하게 뒤집어 쓴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발생 징후가 확인(yes 체크 발견 시)되면 인권감사파견을 통한 추가 교육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참고문헌

IOC(2022), IOC Strategic Framework on Human Rights

IOC(2021), Olympic Agenda 2020+5

IOC(2021), Olympic Charter

대한체육회(2019).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가이드선스

고용노동부(2020). 2020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2020).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안내서.

-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향하여 스포츠가 버려야할 것들

국가인권위원회(2020).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2021). 스포츠인권 현장/가이드라인 정비 연구

스포츠윤리센터(2021). 「스포츠 인권증진 정책 발굴」

체육계 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스포츠인권실태조사」 심층 인터뷰 사례집(2021) 중/고등학생선수 대상

「스포츠인권실태조사」 심층 인터뷰 사례집(2021) 프로/실업팀선수 대상

「스포츠인권실태조사」 심층 인터뷰 사례집(2021) 초/중/고 학생선수 학부모 대상

교육부(2021).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집

서울특별시교육청(2021). 학생을 위한 성폭력 신고 가이드



참고문헌

스포츠윤리센터(2022). 브로슈어

대한빙상경기연맹(2022). 대한빙상경기연맹 인권 가이드라인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edunet.net)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afe182.go.kr)

